

<p>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30조의2(경영평가 및 지도) ①시장은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영원칙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선계획에서 건축물의”를 추가한다.</p> <p>제12조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만, 특례제한 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8조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율”로 한다.</p> <p>제19조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로 하고 “동조 제2항”을 “건축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0조중 “건축법 제48조제1항”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로 한다.</p>
<p>.....</p> <p>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5. “신축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위에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후 제4호의 특례제한건축물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제4조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시장”을 “시행자”로 한다.</p> <p>제5조제1항중 “일반주거지역의 기능”을 “주거기능”으로 한다.</p> <p>제6조제1항중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로 한다.</p> <p>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7조(공동주택 건설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당해 지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8조제3항중 “참작하여” 다음에 “주거환경개</p>	<p>제21조중 “규정은”을 “규정에 불구하고”로 한다.</p> <p>제25조본문단서중 “다음 각호의 주차대수에 따라 산정한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p> <p>제32조제1항제2호중 “그 건축면적 이하”를 “그 건축면적 이하로 하되 신축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 제2항제3호중 “건축법 제3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p> <p>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3조(토지의 가격산정 및 매각시기) ①제31조에 의한 연고권자는 개선계획수립후 건축허가 전까지 제32조에 의한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토지매각 대금의 결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별표]중 “신축(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위에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신축 건축물”로 한다.</p> <p>[별지서식]중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p>

<p>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중진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p>	<p>지속하기 어려울 때 다섯번째, 중대한 交通事故 또는 빈번한 交通事故로 인하여 많은 死傷者를 發生하게 할 때, 이상과 같은 事由가 있으면 交通部長官은 6月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事業의 停止를 命하거나 免許 또는 登錄의 일부 또는 전부를 取消할 수 있다고 規定되어 있습니다.</p>
<p>14.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關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05分)</p> <p>○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14項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關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p> <p>交通委員會所屬 李春洙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p> <p>○李春洙議員 本議員은 交通委員會所屬 李春洙議員입니다.</p> <p>존경하는 白昌鉉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p> <p>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關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本 條例改正 理由는 自動車運輸事業法 第31條2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滯納했을 때 同 條例의 規定에 의하여 滯納課徵金의 5/100에 該當하는 課徵金을 그 동안 賦課해 왔으나, 지난 해 10月末 監査院 監査에서 課徵金 滯納에 대한 加算金 賦課는 違法한 것으로 指摘되었기에, 따라서 條例 第3條第1項에 納付義務者가 課徵金을 納付期限까지 納付하지 않을 때에는 納付期限을 經過한 날부터 滯納된 課徵金의 5/100에 상당한 金額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는 그 規定을 削除코자 하는 것입니다.</p> <p>우리 交通委員會에서는 本 改正條例案을 審査한 結果, 自動車運輸事業法 第31條(事業免許 등의 取消 등)에서 自動車 運輸事業者는 依法 또는 依法에 命命이나 處分 또는 免許許可나 認可에 부한 條件에 違反할 때, 許可 또는 認可를 얻은 事項을 正當한 事由없이  실시하지 아니할 때, 公共福利에 반하는 行爲를 할 때, 事業經營의 불확실 또는 資產狀態에 현저한 不良 기타 事由로써 事業을</p>	<p>同法 第31條의2(課徵金 處分)에는 交通部長官은 自動車 運輸事業者가 法 第31條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同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事業停止 處分에 갈음하여 500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습니다.</p> <p>이상과 같은 根據에 의하여 서울市는 自動車運輸事業者가 同法 第31條에 該當하는 事項이 發生할 경우 同法 第32條의2에 의거 事業停止 處分 대신 500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徵收할 수 있는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關한課徵金徵收條例를 85年 2月부터 制定하여 運用해 왔습니다.</p> <p>그러나 그 동안 問題가 되고 있는 同 條例 第3條第1項에 의거 課徵金 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않을 때에는 納付期限을 經過한 날로부터 滯納된 課徵金의 5/100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金으로 徵收하여 왔던 것입니다.</p> <p>한편 地方自治法 第15條에 의해서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事項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고 規定되어 있으므로, 同 條例는 課徵金 滯納에 대한 加算金 賦課는 住民에게 義務를 賦課하는 事項이므로 自動車運輸事業法에 구체적으로 委任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p> <p>現行法에는 委任이 없으므로 그 동안 서울市에서 運用해 온 自動車運輸事業에關한課徵金徵收條例 第3條第1項에 의거 課徵金 滯納者에 대하여 加算金을 賦課한 것은 違法한 것으로 당연히 削除되어야 한다고 判斷, 關聯條例를 改正하게 된 것입니다.</p>